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의2에 따라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08년 1월 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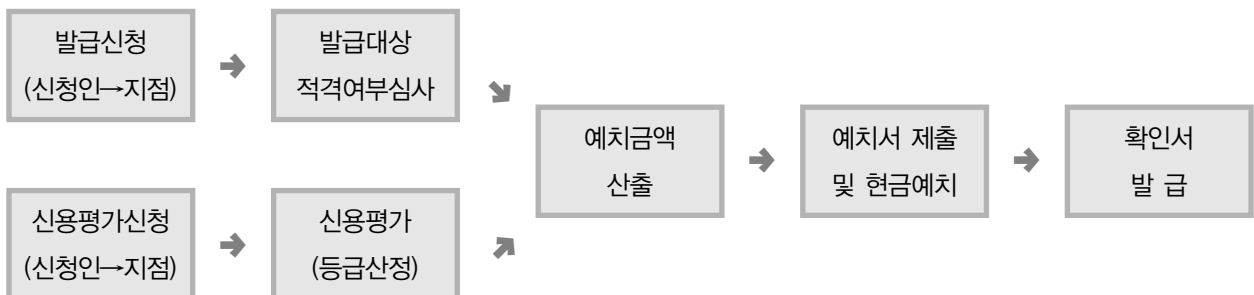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이사장 이영식

□ 발급대상 및 내용

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등 건설업종을 등록 또는 유지하기 위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우리 조합의 신용평가를 먼저 받아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업종별 법정자본금(2억원)의 100분의 20내지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현금을 예치(출자)하여야 합니다.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은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으로 지정 받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 확인서 발급절차



1. 신용평가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우리조합 제규정에 따라 재무상태·신용상태 등을 평가받아야 하며, 신용등급은 재무평점모형, 부실예측모형, 비재무모형, 필터링시스템 등의 복합적인 평가 방법으로 정규평가(9개등급)와 간이평가(3개등급)로 구분됩니다.

2. 신청시 구비서류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보증가능금액확인신청서 (조합서식)

나. 예치서(조합서식)

- 다.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제외) 1부
- 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마. 법인인감증명서(개인은 개인인감증명서) 1부

3. 예치(출자)

신청인은 업종별예치좌수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용하기 편리한 조합지점에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은행계좌에 입금하시면 됩니다.

4. 확인서 발급

건설업등록에 필요한 신용등급별 예치좌수에 따른 예치(출자)금을 확인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여 드리며, 동 확인서 발급내용을 관할 등록관청에 통보하고 인터넷에 게시합니다.

□ 유효기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한 날로부터 1년입니다. 따라서, 매년 유효기간 만료 전에 조합의 새로운 확인서를 발급 받아 해당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만 건설업등록이 유지됩니다.

○ 예치(출자)금액

구 분	CCC등급 이상	CC등급	C등급
예치좌수	44좌	49좌	73좌
예치금액	40,200,160원	44,768,360원	66,695,720원
보증가능금액	2억원 이상 (44좌×913,640×5.5배)	2억원 이상 (49좌×913,640×4.5배)	2억원 이상 (73좌×913,640×3배)

□ 조합업무이용

조합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 받아 건설업 등록을 하신 분은 조합가입 및 청약절차에 따라 예치금을 조합 출자금으로 전환하신 후 조합이 정한 제 규정에 의하여 조합과 업무거래 약정을 체결한 다음 조합이 제공하는 보증 및 용자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보증거래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의무 또는 채무를 보증대상으로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산업
-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
-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

2. 용자거래

가. 용자대상의 제한

(1) 신규조합원은 조합예치(출자)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용운영자금 용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해당 좌수 이외에 보증한도 부족 등의 사유로 증가한 좌수에 대하여는 용자가 가능합니다.

(2) 또한, 조합원이 건설업종을 추가로 등록하고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을 경우 동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예치(출자)금에 대하여는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년까지는 신용운영자금 용자를 제한합니다.

나. 용자의 범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기준좌수에 대한 좌당 용자한도는 출자지분액의 60% 범위내로 하며, '08년부터 '10년까지 3년간 단계적으로 아래와 같이 하향 적용됩니다.

단, 기준좌수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전한도와 동일합니다.

연도별 신용운영자금 1좌당 한도

신용운영자금	2008년	2009년	2010년
기준좌수 이내	640,000	603,000	548,000
기준좌수 초과	667,000		

□ 확인서 해지

확인서 발급 이후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확인서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효력이 해지됩니다.

1.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그 효력이 상실된 때
2.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

았을 때

3. 조합이 담보권을 실행, 예치(출자)금 또는 출자증권의 압류집행 등으로 인하여 업종별 예치좌수에 미달한 때
4. 건설업을 양도한 때.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8조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신용등급이 변동되어 업종별 예치좌수에 미달한 때
6. 신용평가를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 담보권의 실행

우리조합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에 따른 예치금을 담보로 보증·용자를 실시한 후 담보권을 실행할 때에는 그 내용과 절차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사전에 통지합니다.

□ 기타

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및 해지에 관한 세부 기준을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2.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및 해지 등 현황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 등을 통하여 등록관청에 통지하고 조합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합니다.●

“고객에 대한 책임경영의 실현”

바로 2008년 1월부터 시행되는
설비조합 근로자재해공제상품입니다.

상품 설명

근로자재해공제는 조합원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그로 인한 조합원의 손해배상책임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지급책임 범위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보상하여 주는 공제상품입니다.

가입 대상

조합에 출자한 조합원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상내용

- 보상한도액
1인당 1천만원에서 5억원, 1사고당 1천만원에서 10억원으로 하며, 공제기간 중에 사고 횟수와 관계없이 매 사고에 대하여 보상한도액이 적용됩니다.
-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

- 상실수익금(산업재해보상법상의 재해보상책임을 초과한 금액)

- 향후치료비(산업재해보상법상의 재해보상책임을 초과한 금액)

- 위 자 료

- 방어비용

- 소송비용 : 소송, 조정의 경우 필요비용, 변호사 보수, 소송비용

- 협력비용 : 손해보험사의 요청에 의하여 지출한 제반 비용

가입시 혜택

- 조합원의 금융비용이 절감됩니다.

- 조합원사가 개별적으로 보험가입할 때 보다 약 10% 절감된 보험료 제공

- 책임경영실현의 일환으로 조합원에게 수익을 환원합니다.

- 일원화된 조합서비스(보증, 근재보험, 용자, 신용평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가입안내

구 분	공사장별 계약	연간포괄 계약
내 용	공사현장 단위로 공제계약 체결	공사계약자 단위로 공제계약 체결
공제기간	공사기간 원칙	1년 원칙
제출서류	① 근로자재해공제계약청약서(조합양식) ② 공사(하)도급계약서 사본 ③ 공사비내역서 사본(인건비내역포함)	① 근로자재해공제계약청약서(조합양식) ② 전년도 손익계산서 및 공사(제조) 원가명세서상의 노무비 ③ 산재보험보험료보고서 사본
인 건 비 계산방법	공사내역서상의 인건비 ※ 공사내역서에서 확인 불가시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표준노무비율을 적용	손익계산서상의 인건비(급여, 상여금) 공사(제조)원가명세서상의 인건비 ※ 임원급여, 퇴직급여는 제외

※ 공제료산출방법

공사장별계약 : 당해 공사현장의 인건비 × 공제요율

연간포괄계약 : 전체근로자의 연간 총인건비 × 공제요율

보상안내

우리조합은 동부화재, 메리츠화재, 흥국쌍용화재와의 업무협정을 통하여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수 있는 처리를 보장합니다.

보상처리절차

공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에서 사고조사, 손해사정을 통해 조합원에게 직접 보상처리해 드립니다.

보상처리흐름도

- 사고접수 전화 : 1588-0100
- 보험금 청구시 필요서류
 - 보험증권사본, 산재급여 지급 확인원, 근로계약서, 공사(하)도급 계약서, 임금대장, 후유장애진단서
- 사고발생 (조합원사 고용근로자 사고발생) → 사고통보 (보험사 또는 조합의 창구뿐 아니라 인터넷, 전화, FAX등으로도 간편한 사고접수) → 보험금청구서류접수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접수) → 손해사정 (사고원인과 손해의 인과 관계, 보험가입금액을 고려한 손해액 산정) → 가지급금 지급 (보험금 지급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경우 가지급금 지급) → 보험금 지급 (on-line 입금 처리로 신속 지급)